

True Hub of Financial Service
서비스 이용신청서

서비스 안내^o

회사 소개

● (주)효성 IT계열사로서 전자금융서비스 담당

효성에프엠에스(주)는 효성그룹의 IT계열사로 국내외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과 판매, CD-VAN 서비스를 축적한 전자금융인프라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고의 결제 서비스 업체

효성에프엠에스(주)는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유무선결제, 카드결제 등 기업고객이 필요한 모든 결제인프라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자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효성에프엠에스(주)는 이용자가 자금관련업무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통합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정도의 간단한 프로그램만으로도 자금 관리 업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뿐만 아니라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수납관리서비스 : 정기적 혹은 지속적인 자금 수납업무를 지원하는 통합결제서비스입니다. 또한 업종별 특화상품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배달, 후원, 교육, 보육, 임대 외 다양한 업종)

자동이체서비스

회원으로부터 물품대금, 서비스 이용료, 회비 등의 수납대금을 회원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입금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

대상 : 세무&회계사 가정료, 정수기 관리비, 카드조회기 관리비, 후원금 모금 등

가상계좌서비스

회원(또는 거래)별로 고유의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입금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원별 부여한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 : 소풍물, 일반기업, 배달업체(우유, 녹즙), 금융기관, 방문판매업체 등

유무선전화결제서비스

회원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가입 정보로 각종 수납대금을 승인한 후,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서비스

대상 : 후원단체 또는 정당정치 후원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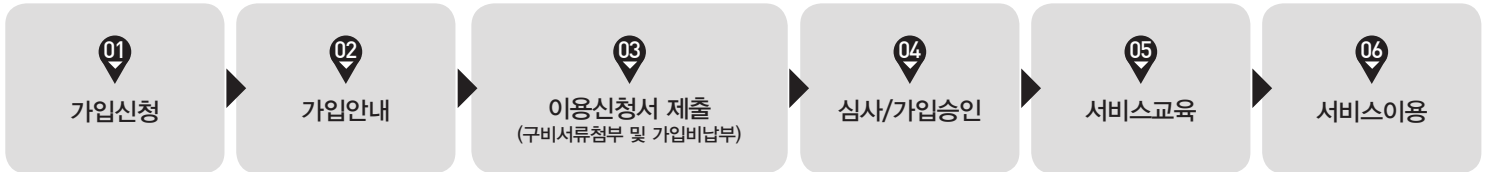
카드결제서비스

회원이 물품대금, 서비스 이용료 등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 : 온라인쇼핑몰, 세무 조정료 등

- 고지대행서비스 : 종이 형태의 기존 고지서 대신 문자메시지/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회원에게 납부정보를 고지하고 회원이 직접 온라인에서 납부할 수 있는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고지로)
- 전자동의서비스 : 자동이체동의서를 서면으로 징구하기 어려운 업체를 위해 온라인공인인증서, ARS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Sign)

가입 및 이용절차



^o서비스 컨설턴트 : _____ ^o연락처 : _____

구비서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영리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고유번호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부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부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부
<input type="checkbox"/>	거래용통장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거래용통장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거래용통장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1부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1부 (법인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추가구비서류

- ▶ 회계사 - 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 ▶ 노무사 - 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
- ▶ 유치원, 어린이집 - (보육시설)인가증(서)사본 1부
- ▶ 상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사본 1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서 사본 1부
- ▶ 정당정치 - 선관위신고서 사본 1부

가입비 납부 및 우편 접수 정보

- 가입비 납부계좌
 - ▶ 은행명 : 국민은행
 - ▶ 계좌번호 : 469301-01-128299
 - ▶ 예금주 :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 우편접수처
 -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18층 효성에프엠에스(주) CMS담당자 앞 (우)135-884

서비스 이용신청서^o

효성에프엠에스(주) 귀중

■ 신청업체정보 [법인 개인] (업체의 기본정보를 기재하세요.)

이 용 신 청 ID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법인 등록 번호 또는 ¹⁾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 - □□□
세 금 계 산 서 ²⁾ 수 신 이 메 일			
홈 페이지 URL ³⁾			

- ▶ 1)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2) 세금계산서 수신이메일에 작성한 주소로 서비스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행
Daum메일(한메일)은 세금계산서가 스팸차단 되는 경우가 빈번하오니 가급적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3) 홈페이지 보유 시 이용 가능한 서비스(전자동의서비스연동, 신용카드결제 등) 신청 시 반드시 기재

■ 이용서비스

서비스구분 (택일)	ASP (: 변동 <input type="checkbox"/> : BESTCMS) (:)
	<input type="checkbox"/> 결제 서비스 이용방식 : <input type="checkbox"/> 고 지 로 <input type="checkbox"/> ASP <input type="checkbox"/> Online 약정일: 일 단문고지: 원/건 <input type="checkbox"/> 연 동 (프로그램 :) <input type="checkbox"/> On/Offline 장문고지: 원/건

■ 상세신청서 (이용신청 항목에 체크하세요.)

(V.A.T 별도)

이용목적 및 요금	이용목적		통장기재내역					
	가 입 비	100,000 원	월 사 용 료					
이용요금납부정보	은 행 명		예금주명		계 좌 번 호			
수 납 계 좌 정보	은 행 명		예금주명		계 좌 번 호			

서비스 신청 및 이용조건	구 분	수 수 료	정 산 주 기	기 타		
	<input type="checkbox"/> CMS <input type="checkbox"/> 가상계좌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유선전화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전자동의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반	/ 원	2 일	건당/월간출금한도	원/ 원
<input type="checkbox"/> 실시간		의뢰 원/출금 원	출금일로부터 일	보 증 방 식	□보증보험 □현금담보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상계좌		입금건당 원	입금일로부터 일	신 청 계 좌 수	계좌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수납액의 %	결제 승인월로부터	개월 후	일	예)2개월 후 말일
<input type="checkbox"/> 유선전화		수납액의 %	결제 승인월로부터	개월 후	일	예)2개월 후 말일
<input type="checkbox"/> 결제		승인액의 %	승인일로부터 일	건당/월간승인한도	원/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결제		승인액의 %	승인일로부터 일	보 증 방 식	□보증보험 □현금담보 □기타()	
<input type="checkbox"/> 전자동의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실시간(건당 원)		이 용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연동 <input type="checkbox"/> 미연동	

특약사항	:	1000 75,000
	:	1000 25,000 가 .

- ▶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월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용요금납부정보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출금됩니다. 첫 출금일은 5일이며 미납시 25일까지 재출금됩니다.
- ▶ 가상계좌서비스는 당사와 제휴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 기업, 우체국, 부산, 대구, 광주, 삼성증권)

신청인(업체)은 서비스 신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이용거래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합니다.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인(업체): _____ <small>*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구비</small>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 동의서^o

자동이체동의서 의무 징구 확인서

자동이체동의서 의무 징구 안내	자동이체동의서 요건
가) 자동이체동의서는 동의서 요건에 맞게 징구하여야 합니다. (유선 또는 구두동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출금하고자 하는 서비스(혹은 물품)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자동이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미수금이 있다고 임의로 출금 할 수 없습니다. 라) CMS서비스는 단순한 자금출급기가 아닌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서비스이며, 동의 없는 출금 시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청구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가) 자동이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날인이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 예금주의 계좌번호, 주민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출금일(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 서비스(혹은 물품)를 제공하는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라) 자동이체되는 서비스(혹은 물품)의 명칭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 : 가장료에 대하여 출금 동의를 받는 자동이체동의서로 조정료 출금 불가) 마) 고객의 자동이체와 관련된 정보를 효성에프엠에스(주)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녹취 시에도 가)~마)항이 정확히 녹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자동이체동의서 의무 징구 안내를 (받았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의 자동이체동의서 요건대로 징구할 것을 (확약합니다.)	

귀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의 명기된 [자동이체동의서 의무 징구 안내]와 [자동이체동의서 요건], 이용거래약관에 표기된 제 18조[자동이체동의서 접수]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를 받았으며, 당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동이체동의서를 충실히 징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o신청인(업체): _____ (서명 또는 인감)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신용조회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 NICE신용평가(주) 등
조회하는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신용정보 : 신용평점 및 등급, 채무불이행정보, 신용회복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개설정보, 신용조회정보, 기타 본인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 목적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본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조회동의효력기간	본 동의는 계약의 종료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당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본인은 귀사가 상기 조회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계약의 성립에 필수적이므로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의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용거래약관 제 15조[신용정보의 조회]에 의거 귀사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o신청인(업체): _____ (서명 또는 인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위탁에 관한 동의

가.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이용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권유, 계약 성립/변경 내용 및 이용요금 연체정보 고지, 세무계산서 관련 정보 제공, 민원업무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정보 제공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법령상 의무이행의 목적으로 관계법령의 의거 해당 정보는 일정기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 시 불이익	당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이용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나. 제 3자에 대한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	영업대행협력사, S/W제휴협력사, 고객센터, 마케팅대행사(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				
위탁받는 자의 이용목적	구분	취급위탁 목적		구분	취급위탁 목적
	영업대행협력사	이용교육 및 서비스 관련정보 제공 등		고객센터	서비스 안내 및 변경, VOC접수/해결, 고객만족도 조사 등
	S/W제휴협력사	제공하는 S/W 유지 및 성능 개선 등		마케팅대행사	이벤트에 따른 경품 지급, 사은행사 대행 등
위탁할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 한함 -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위탁업체 현황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위탁받은 자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계약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 시 불이익	당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보만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업체에 처리위탁 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제 3자에 대한 취급위탁에 대해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않음					
• 업무담당자 정보 (업무담당자의 정보를 기재하세요.)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정보	이메일주소

귀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취급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o업무담당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감)

이용거래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본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 라 한다)의 제공자인 효성정보시스템즈(이하 "회사" 라 한다)와 CMS 이용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와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 ① "CMS이용거래"란 회사가 제공하는 CMS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 ② "이용자"란 회사로부터 CMS 이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③ "자율거래"란 이용자가 자기의 납부자료부터 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입금의 납부자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입금예"란 이용자가 각종 지급자금을 회사의 지정계좌로 입금 받아 수취인계좌로 배분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⑤ 본 약관에서 영업일이란 다음 각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 1.대통령령에 의한 공휴일의 공휴일
 - 2.요일일
 - 3.근로자의 날
- ⑥ "결제수수료"란 이용자의 수납 또는 지급 모체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 또는 배분하는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⑦ "사출권"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⑧ "이동요금"이란 기가전화와 결제수수료, 수수료로 말한다.
- ⑨ "납부지"란 이용자의 거래고객을 말한다.
- ⑩ "결제기관"이란 승인을 위한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결제 승인된 금액을 수납 대행하여 결제대금의 입금을 하는 원천기관을 말한다.
- ⑪ "결제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사체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명령"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번호·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⑫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7)」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이용자의 약관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구분한다.
- ②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비스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에 개성이나 제도의 개성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전자적 장치가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계약의 구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이하 "변경일"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단돈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익이 도달하지 않은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 CMS이용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본 약관과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7)」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 4 조 【 CMS이용거래의 범위 】

-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CMS이용거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자동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납부자료부터 납입 받거나 수납 받아야 할 각종 수입 자금을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서비스.
 - ② 휴대폰결제서비스 : 휴대폰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휴대폰요금을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 서비스.
 - ③ 유선전화결제서비스 : 유선전화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전화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 서비스.
 - ④ 입금이체서비스 : 이용자의 각종 지급자금을 이용자가 입금한 회사의 지정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계좌로 배분하는 서비스.
 - ⑤ 전자결제서비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 자신의 계좌에 부여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이용자가 지정한 모체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금명세의 전송업무.
 - ⑥ 신용카드결제서비스 : 납부자가 이용자의 홈페이지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매회,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신용카드 지불결제서비스를 포함한다.
 - ⑦ 전자통지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

제 5 조 【 가압류 및 비밀번호 관리 】

- ① 이용자와 회사는 업무 수행 상 인치 또는 확정한 재판사항을 본 업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그하지 아니한다.
- ② 이용자는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소관한 관리자의 주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6 조 【 계좌의 지정 】

-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용할 수납계좌를 지정한다.
- ② 이용자는 CMS이용거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3영업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내에 전산등록을 마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 【 이동요금 】

- ① 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약정한 이동요금을 납부한다.
- ② 이동요금은 결제기관의 수수료 변동 및 회사의 업무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이동요금은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일월의 1일부터 적용된다. 회사는 이동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E-mail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1개월 전에 고지한다.
- ③ 회사는 자동이체로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에 입금할 때 등지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다. 단 결제수수료는 회사의 별도 약정에 따라 제4항의 사용료와 합산출금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첫 이용거래가 발생한 월부터 서비스 해지처리가 완료된 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부과한다.
- ⑤ 회사는 이용자에게 부과된 사용료를 익월 영업일(이하 "정산"을 영업일)이 아닌 경우 영업일(이하 "정산"을 영업일)에 이용자 지정된 사용료 납부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장부서 없이 CMS로 자동 출금한다.
- ⑥ 이용자가 납기일에 이동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납기일 이후부터 25일영업일(이하 "정산"을 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이하 "정산"을 영업일)에 회사가 지정한 날에 제출금한다.
- ⑦ 이용자가 이동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납부자료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로 입금할 때 이동요금 전체를 공제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제6항에 따른 채 출금 시에도 불구하고 이동요금이 미납된 경우 CMS이용거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2조 제3항에 따라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⑨ 회사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동요금에 대하여 사용료는 납부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수료는 해당월 말일에 사전 등록된 이용자의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 단, 결제수수료를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동일하게 발송한다.
- ⑩ 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송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확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사이트(www.smneed.com)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8 조 【 거래내용의 확인 】

- ① 이용자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CMS이용거래 시 해당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을 제외하고도 형태도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거래사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CMS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한다.
 1. CMS이용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CMS이용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CMS 이용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4. 회사가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받은 이동요금
 5. 납부자의 출금동기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제 9 조 【 손실담보 및 면책 】

- ① 서비스 이용이 본 약관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과적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회사는 전산프로그램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사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액에 대해 배상한다.
- ③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키라든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자연 화재, 강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적 요인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 관련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CMS이용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전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5. 결제기관의 정책변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CMS이용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 ④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⑤ 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납부자와 분쟁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인출 등)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0 조 【 거래사의 철회 】

- ①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거래 완료되지 않거나 CMS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사체를 철회 할 수 있다.
- ② 다만, 철회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자동이체는 회사의 지정된 마감시간까지 CMS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사체를 철회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CMS이용거래의 성실성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용자의 거래사체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납부자의 사망·한정지신신고·금지신신고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사체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 【 이용자의 의무 】

- ① 이용자는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이동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CMS이용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압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CMS 이용거래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거래내역, 지정명 및 예금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납부자에 관한 제한 사항을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한다.
- ⑤ 이용자는 납부자가 출금동원에 관한 내용의 확인요청 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하며,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⑥ 이용자는 사용자명(이체명, 대금지, 사출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사용자정보와정보 변경은 회사가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 ⑦ 이용자는 자동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납부자의 '해지데이터'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⑧ 이용자는 제2조(출금)에 납부자의 보호에 명시된 출금거래납부자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⑨ 이용자는 회사의 CMS 이용거래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내역의 사실 확인 및 미수금채권 발생시 채권환수가 가능하도록 중립적 자료를 포함한 거래내역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중립적자료에 대해 회사의 제출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립적 자료 미제출 및 비정상거래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⑩ 이용자는 납부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⑪ 이용자는 여신(문금)업 등 신용거래 관련법령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명의의 가맹점 명목이 사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회사에게 전거하여서는 안된다.
- ⑫ 전자통지서비스(이체명)에 납부자의 개인(별칭)은 제공되나 금융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단, 「금융실거래법(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한다.
- ⑬ 전자통지서비스(이체명)는 납부자의 동의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12 조 【 서비스의 중지 및 해지 】

- ① 이용자는 회사에게 CMS이용거래의 중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제2조(출금)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한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일인 회사가 이용자의 정보에 전산 등록된 날로 한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제5항의 절차에 따라 CMS이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적절할 수 있으며 해지된 원인을 해소할 때까지 회사는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용자가 이동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한 경우
 3.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가 CMS의 간접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용자의 폐인이 확인된 경우
 6. 이용자의 착오인출로 인한 민원이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7. 대표자의 인, 주, 실, 죽, 사망 등으로 이용자의 CMS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이용자가 CMS이용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9. 결제기관 및 감독기관에서의 이용자의 해지연고가 있는 경우
 10.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를 통하여 납부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11. 이용자의 최근 6개월 동안 이동요금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12. 납부자의 민원 발생 시 이용자가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대응하지 않은 경우
 13. 제11조(이용자의 의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4. 납부자의 민원이 각종 이용자가 납부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이용자가 제3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CMS이용거래의 해지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소명자료를 통하여 해지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된 소명자료에 CMS이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전항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CMS이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결제기관이 정기검사를 통보하거나 회사가 CMS서비스 계약에 있어 전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기술적 필요에 따른 일정한 중단이 필요한 경우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제6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회사의 홈페이지, 서비스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단, 천재지변, 긴급장애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이용자가 CMS서비스 접속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이상 오류를 발생시킴을 경우 CMS이용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CMS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 13 조 【 이용 기간 】

- ① 본 CMS이용거래는 계약서가 회사에게 접수되고 회사가 이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② 본 CMS이용거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해지의 서면의사표가 없는 한 이용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4 조 【 부정접속 방지 】

- ① 회사는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5회를 초과할 경우 CMS이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이용중지의 해제를 원할 경우, 회사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신용정보의 조회 】

이용자는 본 CMS이용거래의 승인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신용정보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다.

제 16 조 【 합의관할 】

본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 장 자동이체서비스

제 17 조 【 담보금의 설정 】

-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추진 관계가 있고 있는 은행 등의 관련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월간출금한도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CMS이용거래 승인과 동시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는 회사에게 회사를 피보탈자로 하는 이통보통보통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월간출금한도 이상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담보금에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처리, 제 7조에 규정된 이동요금 부족분의 총량, 부도지급금 반환,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제항의 담보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본 CMS이용거래가 해지 될 경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이용에 한하여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제 18 조 【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

- ① 이용자는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납부자에게 반드시 자동이체동의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납부자료부터 받는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 또는 녹취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2.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통지서비스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3.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한 방법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 ③ 이용자가 납부자료부터 받는 자동이체동의서에는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식명
 2. 자동이체를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단, 납부자와 예금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 필요

이용거래약관

3.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명
4. 사용자되는 서비스의 명칭과 금액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④이용자는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잔상등록 후 이용 보관하며,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서 원본의 조취를 요구할 경우 사제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회사는 이요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이체 신청고제 등의 여부와 신청내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 ⑥이용자는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1.납부자 또는 제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신청서와 신분증사본과 자동이체통의사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등장부)을 첨부한 자동이체 통의사를 받아 처리한다.
 - 2.납부자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제1호에 준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 ⑦이용자는납부자로부터접수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통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나 모든 책임은 이용자이다.

제 19 조 【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 DATA 전송 】

- ①이용자가 회사에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1.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계약사에 정한 처리대상사까지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또는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는 전 연일로 한다.
 - 2.이용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된 자동이체신청정보 중 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자와의 분청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②자동이체 변경, 해지
 - 1.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내용의 변경 그 해지(만료)에 의한 자동해지 등 포함등을 신청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이용자와 회사가 이용을 합의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2.납부자가 이에게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회사에게 서면 또는 납부자본인의 책임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이체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요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를 통해 자동이체를 해지한다. 단, 이용자를 통한 자동이체 해지처리가 지연되어 납부자와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의해 납부자의 자동이체를 해지고,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 3.회사는 제2호에 따라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동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4. 자동이체변경 및 해지 관련한 DATA의 관리는 별도로 행해지는 이용자와 납부자의 계약에 준한다.

제 20 조 【 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

- ①자동이체서비스 업무
 - 1.이용자가 회사에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회관 이체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 2.등록 완료된 자동이체연계번호는 별도의 본인확인 없이 이용자의 정당한 유효한 자동이체이체로 간주한다.
 - 3.회사는 이요로부터 등록된 자동이체연계번호에 의거 이용자의 이체지정공휴일 및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약업일일에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이용자의 회사와의 계약한 정산구간에 의거 수료를 재한 이체의뢰금액을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입금일이 공휴일 및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약업일일에 처리한다.
 - 4.회사는 이용자가 등록된 자동이체연계번호마다 자동이체신청제외의 지급가능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불능으로 처리한다.
- 5.자동이체처리 시 자동이체신청제외에 자기(납부수)가 입금되었을 때에는 그 수부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 6.제2호에 의하여 인출된 후 자기(납부수)가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예금청구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정회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 7.회사가 이요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연계번호에 따라 제18조와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체처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납부자와의 모든 분쟁은 이용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대 납부자 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②자동이체자금의 정산

- 1.회사는 자동이체에 의해 납부자로부터 수납된 수납금등을 일단 회사의 수납계좌에 입금한 후 약정된 정산구간에 의하여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 2.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약업일일에 입금을 한다.
- 3.제2항에 따라 납부자 보조호자로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제2항 제1호의 정산금액에서 환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③착오처리
 - 1.업무처리오류 등으로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정보를 신청하지 아니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는 착오인출 내용을 이용하여 우선회복하여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즉시 착오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을 당일 중으로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납부자가 제18조 제2항의 단서에 의해 대관인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자가 그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 또는 수표에 의거 아니하고 해당 착오입금액을 인출하여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우선통지하기로 한다.
 - 2.이용자가 회사에 자동이체신청을 의뢰한 계좌에서 착오인출사건이 1월(일부러 12월31일 기말발생행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6개월에 의한 입금을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CMS출금을 정회하기로 한다.
 - 3.회사가 제2항 제1호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8조에 의거 이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이체신청내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 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4.회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 ①이용자가 회사에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잔액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 ②이용자가 회사에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제 21 조 【 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 】

- ①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출금거래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납부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를 서면으로 청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 이용자외의 연방정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출금된 경우
- ②회사는 출금거래 납부자로부터 제1항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조치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및 출금지급의 대금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④이용자는 회사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출금거래 납부자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조치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 한다.

제 3 장 입금이체서비스

제 22 조 【 서비스의 처리 】

- ①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입금지급을 생성하고, 송수신하여야 하며, 입금의뢰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②이용자가 등록한 입금의뢰내역은 이체지정일 오전 10:00부터 오후 17:00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이요로부터 등록된 입금의뢰내역이 처리절차에 부합되지 처리되었을 경우 이를 이용자의 정당한 고 유효한 거래의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입금이체업무를 수행한다.
- ④이용자는 총 이체금액(결제수수료 포함)을 이체실행시까지 회사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의뢰대로 입금처리한다.
- ⑤회사는 제2항에 의거 지정계좌의 이용자의 입금액이 입금의뢰금액(결제수수료 포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금의뢰내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 ⑥회사는 입금대상계좌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업무처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가상결제서비스

제 23 조 【 업무처리시간 】

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납부자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이용자 및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 24 조 【 입금업무 처리 】

- ①회사는 이요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거하고 이용자 미리 약정한 수납계좌로 미리 정한 정산구간에 의하여 이체/처리한다.
- ②회사는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대하여 그 개별내역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당일 중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 ③이용자의 가상계좌에 타정전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정전일 추심 완료된 후에 지급가능하며, 타정전 입금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 및 처리는 이용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자체 보관하기로 한다.
- ④회사가 수납한 타정전일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 여부를 이용자의 정산구금 입금시 차감하여 처리하며, 잔액 부족사후유 이용자의 정산구금 입금시 차감하여 정산하거나, 이용자가(회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5 장 휴대결제서비스 및 유선전화결제서비스

제 25 조 【 정보취득 】

- ① 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결제승인거래전 명시된 동의의사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인정하는 동의방법은 제18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며, 납부자로부터 받은 항목은 제18조 3항 3.4.5를 포함하고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상사우번호, 비대면 또는 대면환경에서 납부자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물리적 동인증영자료(전자서명, 인체날인 및 본인서명, 녹취, OTP 등)를 반드시 포함한다. 단, 납부자로부터접수한 동인증영자료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통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②이용자는 결제 동인증신청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 서류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 ③이용자는 회사와의 서면합의 또는 별도 합의한 동의신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26 조 【 정산 】

- ①정산은 해당 결제기간으로부터 회사에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이용자가 결제승인한 당월(이하 'M월')의 결제금액에 대한 실수납액을 기준

- 으로 하며, 회사와 약정한 정산구간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 ②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해 회사는 M월의 결제금액을 최초 정산 받은 해당월을 포함하여 6개월간 이용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단, 결제기판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③회사는 결제기판에서 이용자의 수납액을 정산 반면에 이용자와 상호 합의한 정산구간 단위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자와 약정한 수납계좌로 정산 지급한다. 단, 공휴일 또는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약업일일에 지급하며 결제기판의 사정으로 회사로의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 이용자에게 대한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
- ④회사와 결제기판이 보유한 출금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때까지 회사는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⑤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그 환불에 관한 정산본은 해당월 또는 이후의 정산월에 관한 정산금액으로부터 환불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제2호 악만을 위반하는 경우
 - 2.이용자외의 연방정료 동인증신청서의 장부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납부자가 동의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적으로 청구한 경우
- ⑥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입 있음등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한다.

제 27 조 【 결제승인 】

- ①결제승인요청은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접수한 결제정보로 요청하며, 결제승인요청 시 결제금액은 결제기판이 납부자의 신용도에 따라 규정 한 한도금액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결제기판의 정책에 따라 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 1.결제승인취소 및 환불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거한다.
 - ①결제승인취소는 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해당월에 결제기판이 설정한 기간까지 요청된 경우
 - ②환불은 결제기간 청구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서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 ③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한다.

제 6 장 신용카드서비스

제 28 조 【 정보취득 】

- ①신용카드 자동결제 이용자는 제18조(자동이체 통의서) 접수에 명시된 사항을 신용카드 자동결제통의서 접수시에도 준수하여야하며 납부자의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유효기간을 확인해야한다. 단, 납부자로부터접수한 자동이체통의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통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②이용자는 납부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거나 유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용카드 자동결제서비스에 의해 정기간 통을 위하여 부인이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회사 및 납부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시 보관되는 신용카드 지불정보는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제한된다.

제 29 조 【 거래승인 】

- ①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회사의 사전합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납부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고 객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거래승인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③납부자가 제공한 신용카드번호가 결제기간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 외의 미하는 것으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이용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30 조 【 신용카드 승인제한 】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용도, 매출유형, 납부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정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등 회사의 리스크관리, 운영방침에 따라 이 통에 대하여 일, 월, 년,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승인한다 및 할부거래 개설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약업일일에 입금을 한다.
-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1.이용자가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결제 및 결제대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2.이용자가 회환에 다룬게, 상품권, 선불제, 전보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3.납부자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 제1항 경우
 - 4.이용자의 매회이용내역이 결제기간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 5.이용자가 제23조에서 정한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이용자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인의 이의제 제1항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 7.제3항부터 이의제(가)보전처분(기판류, 가)후 분 등) 또는 강제집행등을 받은 경우
 - 8.이용자가 회사의 CMS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 9.이용자가 제11호 영예에 기술한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연이 해지, 만연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31 조 【 정산 】

- ①회사는 결제기간으로부터 정산 입금된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수수료를 제하고 이용자의 회사(인)의 계약한 정산구간에 의거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원상회 위하 질사 계산하여 입금 처리한다.
- ②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약업일일에 입금을 한다.
-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1.이용자가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결제 및 결제대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2.이용자가 회환에 다룬게, 상품권, 선불제, 전보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3.납부자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 제1항 경우
 - 4.이용자의 매회이용내역이 결제기간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 5.이용자가 제23조에서 정한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이용자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인의 이의제 제1항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 7.제3항부터 이의제(가)보전처분(기판류, 가)후 분 등) 또는 강제집행등을 받은 경우
 - 8.이용자가 회사의 CMS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 9.이용자가 제11호 영예에 기술한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연이 해지, 만연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32 조 【 담보제공 및 물품승인 】

- ①이용자는 본 계약의 위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회사(인)와의 합의하에 회사는 이요에 대한 은행에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을 갈용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설정 금액은 이용자의 매출규모 및 자산전전성, 판매신용도, 거래관전정지(소지자 피해보상보험 매 배보호장치 등)등 동 회사의 이요에 대한 담보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회하기로 한다. 단, 이용자의 매출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행위에 변동이 있을 시 회사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정중사상의 부보기간 내로 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여 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지 시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거래 간에 한하여 이요로부터된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 ④본 계약기간 중 회사의 사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가 1년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 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 ⑤이용자의 월 승인한도는 담보설정금액(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합기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정중사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한하여 설정된다.
- ⑥회사의판단하에 사전에 서면상으로 승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이용자가 지정한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 ⑦6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월 승인한도 및 기타사항은 회사의 영업담당자와 별도로 서면상으로 합의하여 책정한다.
- ⑧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잔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 해외발행 신용카드 】

- ①해외발행 신용카드는 회사와의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CMS 이용이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에 위반한 거래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②회사는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 간에 대하여 환율 거래취소 등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간의 비정상적 증 대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4 조 【 납부자의 이의제(시) 처리 및 부도반환 】

- ①납부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시)의 경우 이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납부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납부자의 이의제(시)의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제31조 제23항(정산대금의 지급보류)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제23항의 경우 납부자가 이의제(시)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결제기간 종료의 합의를 거쳐 반환받은 정산대금에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④이용자의 부도 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채권(순)의 지위를 보유하며, 부도 이후 6개월간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부칙 ('07. 7.)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1.)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1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1.)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11. 5. 9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9.)

-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12. 10. 15부터 시행한다.

서비스 이용승인서^o

귀중

■ 신청업체정보 [법인 개인]

이 용 신 청 ID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법인 등록 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 - □□□
세 금 계 산 서 ¹⁾ 수 신 이 메 일			
홈 페이지 URL			

▶ 1) 세금계산서 수신이메일에 작성한 주소로 서비스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행

■ 이용서비스

서비스구분 (택일)	<input type="checkbox"/> 결제 서비스	ASP (: 변동 <input type="checkbox"/> : BSETCMS) (:)		
	<input type="checkbox"/> 고 지 로	이용방식 : <input type="checkbox"/> ASP <input type="checkbox"/> 연동 (프로그램 :)	<input type="checkbox"/> Online <input type="checkbox"/> On/Offline	약정일: 일 단문고지: 원/건 장문고지: 원/건

■ 상세신청서

(V.A.T 별도)

이용목적 및 요금	이용목적		통장기재내역					
	가 입 비	100,000 원	월 사 용 료					원
이용요금납부정보	은 행 명	예금주명	계 좌 번 호					
수 납 계 좌 정보	은 행 명	예금주명	계 좌 번 호					

서비스 신청 및 이용조건	구 분	수 수 료	정 산 주 기	기 타		
	<input type="checkbox"/> 가상계좌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유선전화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전자동의서비스 기타	CMS	/ 원	2 일	건당/월간출금한도	원/ 원
<input type="checkbox"/> 실시간		의뢰 원/출금 원	출금일로부터 일	보 증 방 식	□보증보험 □현금담보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상계좌		입금건당 원	입금일로부터 일	신 청 계 좌 수	계좌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수납액의 %	결제 승인일로부터	개월 후	일	ex)2개월 후 말일
<input type="checkbox"/> 유선전화		수납액의 %	결제 승인일로부터	개월 후	일	ex)2개월 후 말일
<input type="checkbox"/> 결제		승인액의 %	승인일로부터	일	건당/월간승인한도	원/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결제		승인액의 %	승인일로부터	일	보 증 방 식	□보증보험 □현금담보 □기타()
<input type="checkbox"/> 전자동의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실시간(건당 원)			이 용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연동 <input type="checkbox"/> 미연동	

특약사항	: 1000 75,000 1000 25,000 가 .
------	----------------------------------

▶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월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용요금납부정보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출금됩니다. 첫 출금일은 5일이며 미납시 25일까지 재출금됩니다.
▶ 가상계좌서비스는 당사와 제휴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 기업, 우체국, 부산, 대구, 광주, 삼성증권)

당사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용거래약관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서비스 이용을 승인합니다.	승인일 20 년 월 일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